

연혁 설립자 및 역대 이사장 명단 역대 교장·학장·총장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학교법인 임원 명단 행정조직표

숙명여자대학교 연혁

- 1906년 5월 조선황실 純獻皇貴妃(慶善宮)로부터 龍洞宮趾(구 교사 대지)와 경비보조를 받아 '明新女學校'를 설 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정경부인 李貞淑 여사 취임하다(22일).
- 英親王宮으로부터 황해도 재령군, 신천군, 은율군, 안악군, 경기도 파주군,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농 1907년 경지 1,000여 정보를 받다.
- 1908년 12월 明新高等女學校'로 개칭하다.
- 淑明高等女學校'로 개칭하다. 1909년 5월
- 1910년 4월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고 기예과를 병설하다.
-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로 개칭하다. 1911년 11월
- 경선궁 및 영친왕이 제공한 황해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 3도내 신천, 은율, 안악, 재령, 파주, 완도 1912년 등 6군의 농경지 수익금으로 '재단법인 숙명학원'을 설립하다.
- 1915년 3월 강습과를 병설하다.
- 1935년 8월 小田省吾 선생 교장에 취임하다.
-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학교 부지 6,471평을 무상임대 승락받다. 1938년 5월
 - 12월 재단법인 숙명학원에서 '溆明女子專門學校'를 현 교지(교사 314평)에 창립하고, 가정과기예과전수 과를 두다(21일).
 - 기숙사 부지 1,390.3평을 구황실로부터 양여받다.
- 초대 교장에 小田省吾 선생 취임하다. 가정과기예과에 각 40명. 전수과에 50명의 학생을 선발. 개 1939년 교하다(20일).
- 9월 본관·소강당 및 기숙사(총건평 1.618평)를 신축하다. 1940년
- 임숙재 선생 교장에 취임하다. 1945년 11월
- 1948년 5월 淑明女子大學'으로 승격(22일). 문학부: 국문학과·영문학과·미술학과·음악학과 이학부: 이학과 가사학과를 두다.
- 6.25사변으로 피난지 부산시 동대신동에 가교사를 신축하고 강의를 계속하다. 1951년
- 문학부에 정경학과, 이학부에 약학과를 신설하다. 1953년 2월
 - 서울지구 수복에 따라 서울 본교에 복귀하다. 9월
- 본교 인접 3층 건물(대지 153평, 건평 342평)을 매입하다. 1954년 12월
- 종합대학교로 승격(9일), 문리과대학에 국문학과영문학과교육학과가정학과, 정경대학에 정치외교학 1955년 3월 과경제학과, 음악대학에 음악학과, 약학대학에 약학과의 4개 대학 및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국어 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가정학과를 설치하다. 임숙재 선생 초대 총장에 취임하다.
- 부설 중등교원양성소(3과 240명)를 두다. 1956년 4월
 - 6월 본관 교사 3층(건평 704평)을 증축하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소재 임야 152,720평을 매입하다. 1957년 2월
- 1958년 9월 문학박사 김두헌 선생 제2대 총장에 취임하다.
 - 11월 대강당(총건평 1,142평)을 신축하다.
- 2월 문리과대학에 사학과, 정경대학에 상학과를 신설하고 정경대학 경제학과를 경영학과로 변경하다. 1959년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음악학과, 약학과를 신설하다. 3월
 - 본관 서측교사(건평 587평)를 증축하다. 6월
- 1960년 7월 의학박사 김두종 선생 제3대 총장에 취임하다.
- 도서관(건평 892평)을 신축하다. 1961년 9월
- 1962년 4월 문학박사 이능우 선생 총장서리에 취임하다.
 - 서관 앞 토지 청파동2가 산4-3 외 1필지 2.040평을 매입하다.

체육장 2.820평(현재 서관앞 잔디지역)을 조성하다.

문리과대학에 구문학과생활미술과보건체육과를 신설, 가정학과를 가정관리학과의류학과식품영양학 과로 분과 신설, 정경대학에 경제학과를 신설, 음악대학의 음악과를 기악과성악과작곡과의 3과로 분과, 신설하다.

- 1963년 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교육학과정치외교학과경제학과의 3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에 국어국 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가정학과 음악학과 약학과를 신설하다.
 - 과학박물관 대지 870평을 임차하다. 3월
 - 경제학박사 김순식 선생 제4대 총장에 취임하다. 6월 문리과대학의 구문학과를 구주문학과로 변경하다.

- 9월 서대문구 응암동 임야(152,720평)를 관악구 남현동 임야 449,040평으로 환지하다.
- 1964년 2월 문리과대학의 구주문학과를 불어불문학과로 변경하다.
 - 5월 대학원관(건평 251평, 연 1,143평)을 증축하다.
- 1965년 1월 철학박사 윤태림 선생 제5대 총장에 취임하다.
- 1966년 1월 생활관(건평 65평, 대지 322평)을 신축하다.
 - 4월 과학박물관 4층 건물(건평 1,337평, 대지 870평)을 신축하다.
 - 8월 학교 인접 토지 및 가옥(건평 38평, 대지 110평)을 매입하다.
 - 12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사학과, 박사학위과정에 교육학과정치외교학과를 신설하다.
- 1967년 11월 과학박물관 앞 광장(473평) 미화시설을 완공하다.
 - 12월 청파동 2가 산1-2외 2필지(과학박물관 인접지) 3,200평의 관리권을 이양 받아 교지로 활용하다.
- 1968년 1월 문리과대학에 생활과학과를 신설하다.
 - 2월 김신조의 청와대습격 미수사건 이후 당시 6관구 사령관이 한강 이북의 방위선 구축을 목적으로 본교 소유 남현동 토지를 강제 점유함. 이후 75년 2월부터 86년 3월까지 1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시·군에 산재한 국방부 유휴지 57만여 평으로 환지받다.
 - 4월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 12월 과학박물관 부속건물(건평 17평)을 준공하다. 문리과대학 생활과학과를 물리학과화학과로 분과신설, 약학대학에 제약학과를 신설하고, 문리과대학 생활미술과를 응용미술과로, 보건체육과를 체육학과로 변경하고 정경대학 상학과를 무역학과로 대 체. 변경하다.
- 1969년 2월 문학박사 이인기 선생 제6대 총장에 취임하다.
 - 4월 대학본부와 약학대학을 연결하는 숙명교(육교 길이 30m, 폭 3m)를 준공하다.
 - 8월 신축기숙사 5층 건물(명관, 570평)을 준공하다.
 - 10월 온실 및 부속건물(64평)을 준공하다.
 - 12월 문리과대학의 가정관리학과의류학과 및 식품영양학과를 분리하여 가정대학을 신설하다.
- 1970년 8월 서관교사 4층 건물(2,476평)을 준공하다.
- 1971년 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체육학과, 경영학과를 신설하다.
 - 10월 학생회관(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1,321평)을 준공하다.
 - 12월 문리과대학에 중어중문학과, 가정대학에 아동복지학과를 신설하다.
- 1972년 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가정학과를 가정관리학과식품영양학과로 분류, 증과하다.
- 1973년 2월 법학박사 김경수 선생 제7대 총장에 취임하다.
 - 5월 교양학부를 설치하다.
 - 12월 문리과대학의 응용미술과를 산업미술과산업공예과로 분과하여 산업미술대학을 신설하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불어불문학과응용미술학과를 신설하다.
- 1974년 3월 본관 신축 제1차 공사인 가정대학 교사(1,231평)를 준공하다.
 - 4월 구 효창국민학교 부지 3,681.3평을 교지로 매입하다.
 - 12월 문리과대학에 독어독문학과생물학과수학과를 신설하고 체육학과를 체육교육과로 개편하다.
- 1975년 1월 대학교육개선을 위한 실험대학으로 선정되어 부전공제 실시, 졸업에 필요한 소요이수학점의 감축 (160학점 이상을 140학점 이상으로 개정), 가정대학 및 정경대학의 계열별 모집을 골자로 하는 학칙변경을 인가받다.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물리학과·화학과·의류학과를 신설하다.
 - 4월 교양학부를 폐지하다.
 - 12월 문리과대학에 도서관학과를 신설하다.
- 1976년 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무역학과를 신설하다.
 - 2월 기숙사 숙관 5층 건물(1,706평)을 준공하다.
 - 4월 졸업논문제시행에 따라 학칙변경을 인가받다.
 - 8월 인천시 북구 산곡동(부평) 소재 대지 4.430평을 매각하다.
 - 12월 문리과대학을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분리, 개편하다. 학생회관 위 부지 15.4평을 매입하다.
- 1977년 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중어중문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사학과경영학과를 신설하다.
 - 2월 신축 본관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3,430평, 본관 총평수 4,661평)을 준공하다.
 - 4월 교육학박사 서명원 선생 제8대 총장에 취임하다.
 - 7월 법학박사 차락훈 선생 제9대 총장에 취임하다.
- 1978년 2월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아동복지학과를 신설하다.
 - 6월 동창회에서 시계탑을 준공, 모교에 헌납하다.
 - 12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독어독문학과를 신설, 응용미술학과·음악학과를 폐지하고 산업미술학과산업 공예학과·기악학과·성악학과·작곡학과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불어불문학과를 신설하다.

- 1979년 9월 이과대학(체육교육과 제외)을 계열 모집하는 학칙으로 변경하다.
- 1980년 10월 음악대학 기악과를 피아노과와 관현악과로 개편, 신설하다.
 - 1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생물학과수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에 경제학과물리학과화학과제약학 과를 신설하다.
 - 12월 산업미술대학을 미술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 1981년 8월 정치학박사 김옥렬 선생 제10대 총장에 취임하다. 과학관(이과대학, 미술대학)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건평 3,171평)을 준공하다.
 - 10월 문과대학 교육학과를 교육학과와 교육심리학과로 개편 신설하고 정경대학에 법학과를 신설하다.
 - 11월 교육대학원을 설치하여 석사학위과정에 교육학계, 어문교육계, 사회교육계, 과학교육계, 가정교육계, 예·체능계를 두다.
- 1982년 10월 정경대학을 정법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분리 개편하고, 문과대학에 한국사학과, 이과대학에 전산학과, 무용과, 정법대학에 행정학과, 경상대학에 소비자경제학과, 미술대학에 회화과를 증설하다.
- 1983년 10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도서관학과·제약학과, 박사학위과정에 독어독문학과를 신설하고, 가정학과를 폐지하고, 가정관리학과·의류학과·식품영양학과·아동복지학과로 분류, 증설하다.
 - 11월 산업대학원을 설치하여 석사학위과정에 경영학과, 산업미술학과를 두다.
 - 12월 제2교사 부지로 용인군 이동면 천리 임야 116,220평을 매입하다.
- 1984년 11월 중앙도서관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평 3,568평)을 준공하다. 미술대학 산업공예과를 공예과로 명 칭 변경하다.
 - 12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과생물학과를 증설하다.
- 1985년 8월 정치학박사 김옥렬 선생 제11대 총장에 취임하다.
- 1986년 1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전산학과를 신설하다
- 1987년 5월 경남 양산소재 임야 등 84,984평 매각하다. 부산 광안동 소재 대지 345평 매각하다.
 - 11월 이과대학에 통계학과를 신설하고, 졸업정원 1,320명에서 입학정원 1,520명으로 200명을 증원하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교육심리학과, 한국사학과, 소비자경제학과, 회화학과, 미술사학과를 신설하 여 학생정원은 8계열 34개 학과 510명, 박사학위과정은 83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다.
- 1988년 1월 평생교육원 설립하다.
 - 4월 숙명여자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산업공예학과를 공예학과로 명칭 변경하다.
 - 8월 제2교사부지(이동면 천리 임야 7.560평)를 추가 매입하다.
 - 1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무용과를 신설하여 학생정원은 8계열 35개학과 522명, 박사학위과정은 미술 사학과를 신설하여 6계열 21개 학과 125명으로 증원하다.
 - 12월 대학 내 산림청 소관 임야 1,514.6평을 매입하다.
- 1989년 3월 부산시 광안동 소재 임야 194평을 매각하다.
- 1990년 1월 용인연수원 진입로 2,490평을 증여받다.
 - 3월 약학박사 정규선 선생 제12대 총장에 취임하다. 청과동 소재 재무부 소관임야 580.2평을 매입하다.
 - 10월 용인연수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건평 1,904평)을 준공하다.
- 1991년 1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을 546명으로, 박사학위과정 정원을 141명으로 증원, 산업대학원에 행정학과를 신설하여 3개 학과 19개 전공 135명으로 증원하다.
 - 12월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전산학과, 통계학과에 야간학부를 설치하다(4개 학과 160명).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명칭 변경하다. 본교 소유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산46 외 15필지 260,131평과 국방부 소유 B지구 청파동 3 가 136번지 1,123.2평을 교환하다.
- 1992년 7월 야간학부에 경영학과, 무역학과를 신설하다. (2개 학과 80명)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회화과를 회화학학과로 무용과를 무용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전산학과를 신설하다. 석사학위과정 정원을 546명에서 576명으로 증원하고, 박사학위과정 정원을 141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다.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정원을 135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다.
 - 9월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전자계산교육 전공을 신설하고, 정원을 27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하다.
 - 12월 서관교사 5층(건평 661평)을 증축하다.
- 1993년 9월 미술대학의 산업미술과를 산업디자인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다.
 - 12월 서문앞 재무부 토지 591.4평을 매입하다.
- 1994년 3월 정치학박사 이경숙 선생 제13대 총장에 취임하다.
 - 9월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정보방송학과, 경제학과에 야간학과를 설치하다. (4개 학과 240명)

야간 영어영문학과와 중어중문학과에 각 학과당 20명씩, 전산학과와 통계학과에 각 학과당 10명씩 증워하다.

- 10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은 576명에서 606명으로, 박사학위과정 정원은 150명에서 160명으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은 300명에서 330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산업대학원은 경영대학원(40명 정원), 정책대학원(40명 정원), 디자인대학원(70명 정원)으로 각각 분리 및 소속변경하고 정원 60명의 임상약학대학원을 신설하다.
- 12월 약대 뒤 B지구 산림청 및 국방부 소유 효창근린공원 3,734평을 공원 해제하고, 학교시설로 결정하다. (1차 공위해제)
- 1995년 1월 성북동 소재 임야 3,734평을 매입하다.
 - 2월 창학 100주년인 2006년을 향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2창학을 선언하다. 최희인씨로부터 충남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13 60.397㎡ 기증받다.
 - 4월 약대 뒤 B지구 1차 공원해제 부지내 산림청 및 국방부 소유 토지 2581.8평을 매입하다.
 - 8월 제2창학의 상징으로 새 교문을 신축하다. 학생회관 자리인 용산구 청파동2가 53-13 구유지 30.3평을 매입하다.
 - 10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법학과, 행정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에 무역학과를 신설하다. 석사학위과정 정원은 606명에서 676명으로, 박사학위과정 정원은 160명에서 170명으로 각각 증원 하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은 330명에서 350명으로, 디자인대학원 정원은 70명에서 110명으로, 임상약학대학원 정원은 60명에서 80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경영대학원 및 정책대학원은 40명에서 60명으로 각각 증원하다.

대학내 국유지인 청파동2가 53-39 외 6필지 961.2평을 매입하다.

- 1996년 4월 용인연수원 운동장 부지 4,585평을 매입하다. 21개 부설연구소를 10개로 통합, 개편하다.
 - 5월 창학 9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 7월 용인연수원 진입로 304.3평을 매입하다.
 - 10월 이과대학의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를 자연과학 I계열로, 수학과, 통계학과를 자연과학II계열로, 경상대학의 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를 경제학부로, 경영학과, 무역학과를 경영학부로, 음악대학의 피아노과, 관현악과를 기악과로 약학대학의 약학과, 제약학과를 약학부로 통합 개편하고 야간학부에 홍보기획학과, 환경디자인과를 신설하다. 야간 학부 정원이 540명에서 590명으로 50명 증원되다.
 - 11월 국제관계대학원, 음악치료대학원을 설치하다.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를 설치하다.
- 1997년 1월 김경애 동문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소재 토지 529평을 기증받다.
 - 4월 국제관 건축을 위한 부지로 청파동 1가 98-11외 3필지 361.4평을 매입하다.
 - 9월 교수회관(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441.1평)을 준공하다.
 - 10월 정보통신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을 설치하다.

이과대학의 전산학과, 문헌정보학과가 정보과학부로, 가정대학의 가정관리학과, 아동복지학과가 가정·아동복지학부로,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가 생활과학부로, 정치외교학, 법학, 행정학 및 신설된 특수법무학 전공(야간)이 정법학부로, 정보방송학과, 홍보기획학과가 언론정보학부로 개편·통합하고, 문과대학에 일본학과를 야간으로 설치하다.

야간 입학정원이 590명에서 730명으로 140명 증원되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은 390명에서 405명으로, 박사학위과정 정원은 68명에서 71명으로 각각 증워되다.

교육대학원 입학정원은 150명에서 170명으로, 디자인대학원 입학정원은 44명에서 56명으로, 음악치료대학원 입학정원은 40명에서 52명으로 각각 증원하다.

- 1998년 2월 가상교육센터를 설치하다.
 - 3월 정치학박사 이경숙 선생 제14대 총장에 취임하다.
 - 7월 행정관(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203.4평)을 준공하다.
 - 8월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를 부설기관으로 확대, 여성정보화 지원사업 추진하다. 용인연수원 진입로 중 631-1 도로 41.1평을 매입하다. 학생회관 옥상 144.7평 및 강당 옆 온실 1개소 44.5평을 증축하다.
 - 9월 유아워(121.1평)을 증축하다.
 - 10월 문과대학의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한국사학과를 인문학부로 통합하고, 일본학과(야)를 인문학부(야)로 변경하다.

이과대학의 정보과학부 내 멀티미디어학전공을 신설, 전산학전공을 컴퓨터과학전공으로 명칭 변경하고, 수학·통계학부(야)를 폐지하다.

정법대학 정법학부(야), 언론정보학부(야), 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야)를 주간 전환하다.

야간 입학정원 730명 중 350명을 주간 전환하다.

- 용산구 청파동 2가 47-36 외 9필지 596평을 매입하다. 11월
- 12월 교육대학원 중등교육전공을 폐지하고 상담교육전공을 신설하다.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다.
- 제1국제관(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66.4평)을 준공하다. 1999년 1월
 - 5월 사회교육과학연구소의 아동연구센터를 아동연구소로 분리, 독립하다. 서초구 방배동 산 102-20 외 2필지 임야 2,118.4평을 대체공원 용도로 매입하다.
 - 6월 문신미술연구소를 설치하다.
 - 문과대학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를 교육학부로 통합하다. 10월 이과대학 정보과학부(야) 90명 중 40명은 주간으로 전환하고, 문과대학 문화관광학과(50명 정원)를 신설하다.

가정대학 가정이동복지학부와 생활과학부를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로,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환 경디자인과를 디자인학부로 통합하다.

영어영문학부(야) 20명을 주간으로 전환하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60명, 박사학위과정 15명, 협동과정 10명 증원되다. 교육대학원 50명, 음악치료대학원 10명, 디자인대학원 10명 증원되다. TESOL대학원(정원 30명)을 설치하다. 과학관 지상 5층에 오존관측소 1개소 증축하다.

학생회관 앞 '안쓰는 물건 바꾸어 쓰기 센터(안물바센터)'를 증축하다.

청파동 2가 47-28외 1필지 73.9평을 매입하다. 제2국제관(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6.2평)을 준공하다.

- 2000년 2월 서관 6, 7층(연면적 740평)을 증축하다.
 - 본교 남현동 토지의 수용대가로 85년 4월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 중 경북선산 소재 농지 4필지 4,234.1평에 대해 김재규씨 유가족들이 소유권을 회복해감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 을 통해 관악구 남현동 산 104-3(현 수도방위사령부 소재) 31.070.5평을 되찾다. 본교 B, C지구를 양분하는 일방통행도로와 도서관 및 약대의 경사면을 합한 잔여 공원용지 2,107.9

평을 공원해제하고 학교시설로 결정하다. (2차 공원 해제)

- 4월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를 아시아여성연구소로 명칭 변경하다.
- 5월 제2창학선언 5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다.
- 7월 특수대학원 소속 임상약학대학원을 폐지하고 임상약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다. 디자인대학원 10명, TESOL대학원 10명을 증원하고, 원격향장산업대학원 30명, 원격교육공학대학원 30명을 특수대학원 소속으로 신설하다. 대학원 문헌정보학과를 계열 변경하다. (인문사회→자연과학)
- 8월 정법대학 정법학부를 정치행정학부, 법학부로 분리하다.

디자인학부에 영상애니메이션전공을 신설하다.

한국전통음식연구소를 신설하고, 전산원을 전산정보원으로 명칭 변경하다.

국제어학교육센터를 LinguaExpress(국제언어교육원)로 명칭 변경하고 부속기관으로 편제를 변경하 다.

청파동 2가 53-12 외 7필지 도자기실 105.84㎡(32평) 멸실하다.

제2창학캠퍼스 내 소재 민가 1필지 청파동 3가 117-5번지 72.7㎡(22평) 매입하다. 제2창학캠퍼스 내 소재 민가 1필지 청파동 3가 117-3번지 175.2㎡(53평) 매입하다.

9월 멀티미디어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신설하다. 제2창학캠퍼스(B지구) 약학대학·사회교육관을 준공하다.

청파동 3가 141번지 외 11필지상 약학대학 4,158.3㎡(1,257.9평) 멸실되다.

- 10월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을 중국어교육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다.
- 용인 명신원 진입로 이동면 천리 630-2번지 1,228㎡(371.5평) 매각하다. 11월 제2창학캠퍼스 내 서울시, 재경원, 산림청 토지 6필지 4,864m²(1,471.4평) 매입하다. 본교 소유 관악구 남현동 산 104-3번지 102,713㎡와 청파캠퍼스 내 소재하는 국방부 소유 용산구 청파동 3가 115-26, 117, 산2-21번지 3필지 1.443.1㎡를 교환 취득하다.
- 12월 대강당 뒤 청파동 2가 47-13외 3필지 604.6㎡(182.9평)을 매입하다.
- 제2창학캠퍼스 미술대학을 준공하다. 2001년 1월
 - 2월 임상약학전문대학원을 25명으로 정원 조정하여 임상약학특수대학원으로 전환하다.
 - 지구환경연구소를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하다. 4월 원격교육연수원을 부설기관으로 신설하다.
 - 5월 용산구 청파동 2가 9-22번지 대지 1,564㎡를 매입하다.
 - 6월 부속기관인 전산정보원을 정보통신처로 승격시켜 산하에 정보통신 기획운영팀, 정보시스템팀을 설치

하다.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신설하다.

청파캠퍼스 내 소재하던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소유 용산구 청파동 3가 117-4번지 대지 109.1㎡를 매입하다.

7월 문화관광학과 10명을 증원하다.

임상약학대학원 7명을 증원하고 원격유아교육정보대학원 30명을 특수대학원으로 신설하다.

- 8월 문과대학 인문학부(야) 일본학전공을 일본학과로 주간전환하고,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를 가정· 아동복지학부, 생활과학부로 분리하다.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의 전공을 6개로 세분화하다. 행정조직이 부분적인 팀제에서 전체적인 팀제로 개편하다. 교수회관 신관(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980.82㎡) 증축하다.
- 10월 대학원 석사과정에 멀티미디어학과를 신설하다. 문화예술경영연구소를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하다. 본교 소유 용산구 청파동 3가 142-1번지 임야 109.1㎡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측에 매각하다.
- 12월 제2창학캠퍼스 음악대학을 준공하다. (지상7층 연면적 6,857㎡)
- 2002년 2월 교무처 내 작문능력개발센터, 정보통신처 내 IT교육원, 아시아여성연구소 내 리더십센터를 신설하다.
 - 3월 정치학박사 이경숙 선생 제15대 총장에 취임하다. 과학관 6, 7층(연면적 1,659.5㎡, 502평) 증축하다.
 - 8월 교무처 내 작문능력개발센터를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다.

학생처 내 취업지원실을 신설하다.

직할부서 SOC전담팀을 사무처 내 SOC21팀으로 개편하다.

직할부서 전략기획실을 기획처 내 전략기획팀으로 개편하다.

기획처 내 기획예산팀을 예산기획팀으로 개편하다.

정보통신처 내 기획운영팀을 IT기획운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르 꼬르동블루-숙명 아카데미를 부설기관으로 신설하다.

- 9월 학생처 내 취업지원실을 취업경력개발센터(CADE center)로, 취업지원팀을 취업경력개발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 10월 음악도서실 준공하고, 르 꼬르동블루-숙명 아카데미를 개원하다. 리더십센터 총장 직할부서로 신설하다.
- 12월 원격교육공학대학원, 원격향장산업대학원, 원격유아교육정보대학원을 원격대학원으로 통합하다.
- 2003년 3월 본부에 대외협력처를 신설하고 기획처 발전협력팀, 대외교류팀을 대외협력처로 소속 변경하다. 언론정보학부 내 홍보기획학전공을 홍보광고학전공으로, 정보과학부 내 멀티미디어학전공을 멀티미 디어과학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다. 대강당 뒤 청파동2가 47-18외 4필지 314.4㎡를 매입하다.
 - 8월 입학처를 신설하고 입학처 내 입학기획팀을 신설하며 교무처 입학관리팀을 입학처로 소속 변경하다. 교무연구관리실 폐지하고 교무처 내 교무지원팀 및 연구지원팀을 신설하다. 대외협력실 내 산학협력팀 신설하고 기획처 홍보실(홍보팀)를 대외협력처로 소속 변경하다. 일반대학원 교학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로 각각 이관하여 학사-석·박사과 정 통합 관리를 실시하다.
 - 8월 석사학위과정에 문화관광학과를 신설하다.
 - 9월 정보통신대학원의 정원을 4명 축소하여 41명으로, 음악치료대학원의 정원을 6명 축소하여 56명으로 하고 사회교육대학원을 신설하여 정원 10명의 놀이치료학전공을 설치하다.
 - 9월 원격대학원의 사이버교육전공을 원격교육공학으로 명칭변경하다. 부설연구기관 한국전통음식연구소를 한국음식연구원으로 명칭변경하다. 지역학연구소 내 한국어문화 연구센터를 신설하다.
 - 10월 르네상스플라자(박물관, 정영양 자수박물관, 문신미술연구소, 연주홀) 14,863.87㎡, 지하주차장(한국음식연구원, 지하차도, 주민이용주차장) 8,799.89㎡ 완공 및 약학대학 474.75㎡ 증축하다. 도시계획결정 조건에 따라 지하차도, 주민이용주차장(38면) 지상권 설정 후 용산구청에 기부채납하다.
 - 11월 대학원 석사과정 자연과학계 이학계 문헌정보학과를 인문사회계 인문계로 계열변경하다.
- 2004년 2월 부속기관 사이버교육원을 폐지하고 교무처 내 사이버교육원으로 신설하다. SOC21팀을 폐지하고 총무·인사팀을 SOC 총무·인사팀으로 개편하다. 원격대학원 교학팀 신설, 지역학연구소 내 숙명통번역센터를 신설하다.
 - 3월 문헌정보학 전공을 이과대학 정보과학부에서 문과대학 인문학부로 소속변경하다. 제2외국어문학부(주), 일본학과, 문화관광학과를 인문학부로, 제2외국어문학부(야)를 인문학부(야)로

통합하다.

9월

- 3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산학협력팀을 신설하다. (대외협력실 내 산학협력팀 폐지)
- 5월 부설기관 창업지원센터,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및 문신미술연구소 폐지하고 부설기관으로 문신미술관을 신설하다.

인재관(4,998.57㎡, 1,512평)을 준공하다.

- 6월 연계전공으로 '공통사회 전공', '공통과학 전공', '리더십 전공'을 신설하다. 식품영양학전공 연계 '르꼬르동블루-숙명 학교기업'을 신설하다.
- 총장 직할의 한시적인 부서로 '대학자체평가추진실'과 'ERP추진팀'을 신설하다.
- 10월 리더십센터를 숙명리더십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다.

부설기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설하다.

- 11월 청파동2가 47-9외 3필지 33.6㎡ 국유지 재정경재부로부터 매입하다.
- 12월 대강당 뒤 교지 24필지를 1필지로 합필, 정리하다.
- 2005년 2월 제2창학캠퍼스에 백주년기념관(7,685.08㎡)을 준공하다.

학생회관(1,2층-264.12m²)을 증축하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269-1, 207-3 2필지 토지 953㎡가 "서울장지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됨에 따라 매각하다.

숙명리더십개발원 하부에 리더십연구기획실을 신설하다.

교무처 사이버교육원을 원격대학원과 통합하고, 교무처에 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하부에 연구지원 팀을 두다.

학생처 취업경력개발센터를 부속기관 취업경력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하부에 취업경력개발팀을 두다.

사무처에 구매팀을 신설하다.

대학에 리더십 교양학부를 두다.

부설기관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를 연구소로 개편하고, 부속기관에 숙명문화원을 신설하다. 지역학연구소 내 센터 전체 및 산업디자인연구소 내의 문화상품개발센터를 폐지하다.

3월 법과대학을 신설하여 법학부를 두고 정법대학을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하다.

일반대학원에 통계학과 박사과정을 신설하다.

경영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을 통합하여 테크노경영대학원(정원 45명)으로 개편하다.

테크노경영대학원 내에 서비스경영전공을 신설하고 사회교육대학원 내에 리더십교육전공 및 유리 드믹스전공을 신설하고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다.

4월 부설연구소에 한국어문화연구소, 여성건강연구소,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를 신설하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49의 2 에이트리움-고려 빌딩 2층 11개호실 1,169.92㎡를 매입하다.

7월 부설기관에 성평등상담소, 국제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하다.

이하 관련학칙 개정(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특수대학원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을 신설하다.

학부 야간 정원 220명(영문40, 인문100, 경제40, 경영40)을 전원 주간 전환(218명)하고 정원조정하다. (대학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정원2명 감축)

법과대학 법학부 정원 98명 증원(198명 정원), 문과대학 내 인문학부 문화관광학전공을 문화관광학부(80명 정원)로, 자연과학부 생명과학전공을 생명과학부(정원 60명)로 독립하다.

인문학부 정원 380명을 350명으로 영어영문학부 정원 100명을 120명으로, 자연과학부 정원을 120명을 60명으로, 경제학부 정원 90명을 110명으로, 경영학부 정원 160명을 180명으로 조정하다. 기악과를 기악학부로 변경하고 피아노 전공과 관현악 전공을 두다.

디자인학부(100명) 6개 전공을 3개 전공(시각·영상디자인,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으로 조정하다.

- 8월 명신신관 3,946.06㎡를 준공하다.
- 9월 도서관 지하열람실 3,164.09㎡를 증축하다.
- 2006년 1월 부설 아태정보통신센터의 명칭을 아태정보통신원으로, 부설 국제인적자원개발센터의 명칭을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센터로 각각 변경하다.
 - 1월 일반대학원에 석·박사 통합과정(박사정원의 20%내)을 설치하다. (2006학년도 1학기 적용)
 - 3월 도서관 리노베이션 및 세계여성문학관 복층 설치완료하다. (면적 397.61㎡ 증가) 정치학박사 이경숙 선생 제16대 총장에 취임하다.
 - 4월 부설연구기관 한국음식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전환하고, 부설연구기관 지식산업법제연구소를 신설하다.
 - 5월 창학 10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부설연구기관 여성건강연구소에 여성나노바이오소재센터 및 임상지원팀을 신설하다.
 - 8월 대학원관(진리관) 8,363.26㎡를 준공하다. 한국음식연구원 강의실 180㎡ 확장하다.

- 9월 문화관광학부(정원 80명)에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을 신설하다. (2007학년도 1학기 적용) 특수대학원 정책대학원과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정책산업대학원(정원 43명)으로 통합하고 마케팅전공 등 5개 전공을 폐지하며, 디자인대학원을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각디자 인전공 등 9개 전공을 폐지하고 패션디자인전공을 패션코디네이션디자인전공으로 변경, 리빙스타일 디자인전공을 신설하며, 임상약학대학원에 사회약학전공을 신설하고, 사회교육대학원내에 피아노페 다고지전공, 골프매니지전공, 미용예술전공을 신설하다. (2007학년도 1학기 적용) 전문대학원으로 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정원:주간20명, 약간20명)을 설치하다. (2007학년도 1학기 적용)
- 11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정보방송학과, 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를 신설하다. (2007학년도 1학기 적용)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10명 감축하여 394명으로 하고 석사과정 공예학과와 회화학과를 조형예술학과로 통합하며 미술사학과를 미술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계열을 변 경하다. (2007학년도 1학기 적용)
- 2007년 2월 교무처 내 교수학습센터에 교육매체e-learning 지원팀을 신설하다. 부설기관인 도서관내 인문과학정보팀, 사회과학정보팀, 자연과학·예체능정보팀을 폐지하여 장서개발팀, 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정보관리팀을 신설하고, 전자정보·지원팀을 전자정보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정보과학부의 모집단위를 정보과학부(120명)에서 컴퓨터과학전공(85명), 멀티미디어과학전공(35명)으로 변경하다.
 - 4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멀티미디어과학과를 신설하다. (2007학년도 2학기 적용)
 - 5월 충남 보령시 신흑동 1069 토지 370㎡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제3지구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매각하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오피스텔 826호(전용면적: 38.45㎡) 교수숙소의 용도가 폐기됨에 따라 매각하다.
 - 부속기관인 교육방송국을 영상미디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하다.
 - 6월 부설연구기관으로 문화예술관광연구소를 신설하다. 교무처 내 의사소통능력개발세터를 의사소통세터로 명칭을 변경하다.
 - 7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18-48 건물 1,290.73㎡, 대지 257.5㎡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 9월 부설연구기관 사회교육과학연구소를 폐소하고, 해당 연구소 기능을 통일문제연구소에 통합하다.
 - 10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53 영화빌딩 건물 1,453.4㎡, 대지 636.7㎡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부설기과 출판국을 폐지하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여성학협동과정(15명)을 폐지하고 박사과정 입학정원 10명을 증원하다.

- 11월 부설기관 원격연수원을 폐지하다. 지식법제연구소를 법학연구소로 명칭 변경하다.
- 12월 인문학부의 사학전공과 한국사학전공을 역사문화학전공으로 신설하다. 교육학부의 교육학전공과 교육심리학전공을 교육학부 교육학전공으로 통합하다.
- 2008년 2월 지역학연구소를 통일문제연구소에 통합하고, 통일문제연구소를 다문화통합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다.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라 약학대학 입학정원 80명을 한시적으로 문과대학(인문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 전공, 영어영문학부)에 28명, 이과대학(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수학·통계학부,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에 25명, 생활과학대학(가정·아동복지학부, 생활과학부)에 10명, 사회과학대학(정치행정학부, 언론정보학부)에 12명, 경상대학(경제학부)에 5명씩 각각 전환하다.

- 2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 삼성래미안 공덕2차아파트 103동 1203호 전용면적 59.97㎡를 기숙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 3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21-3외 13필지 대지 3,658.95㎡, 건물 2,275㎡, 주차전용건물 1,998.92㎡ 를 (재)대한천리교단으로부터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161 신공덕3차 삼성래미안아파트 301동 2201호 전용면적 59.96㎡를 기숙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 4월 대학원 박사과정에 무용학과(무용학전공)를 신설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 삼성래미안 공덕2차아파트 106동 2003호 전용면적 59.97㎡를 기숙시설 용 도로 매입하다.
- 8월 대학원 석사과정 사학과와 한국사학과를 역사문화학과로 통합하다. 대학원 박사과정 사학과를 역사문화학과로 변경하다. 대학원 석사과정 불어불문학과를 프랑스언어·문화학과로 변경하다. 대학원 박사과정 불어불문학과를 프랑스언어·문화학과로 변경하다.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와 교육심리학과를 교육학과로 통합하다.

입학처에 입학사정관팀을 추가, 설치하다.

기숙사(명재관) 12.584.61m²(3.807평)를 준공하다.

- 9월 이학박사 한영실 선생 제17대 총장에 취임하다.
- 12월 대외협력처의 대외교류팀을 국제교류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다. 산학협력단 산하 산학협력팀을 산학기획팀, 산학운영팀으로 분리, 설치하다.
- 2009년 1월 여성건강연구소에 SIS 면역학연구센터를 추가, 신설하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182 도로 69.3㎡를 기숙사 건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아 용산구청에 기부 채납하다. 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 호스피탈리티경영전공을 르꼬르동블루호스피탈리티경영전공으로

명칭병경하다. 2월 기숙시설인 서울 서초구 반포1동 20-1 반포주공3단지아파트 319동 104호 전용면적 49.98㎡ 의 재 기축으로 시출되 방교기상이되는 192동 1992호 기유머리 84.000㎡로 배기방이 있도 방디

- 2월 기숙시절인 서울 서조구 반포1동 20-1 반포구공3단시아과트 319동 104호 전용면적 49.98㎡ 의 지 건축으로 신축된 반포자이아파트 123동 1202호 전용면적 84.998㎡를 배정받아 인도 받다. 입학처의 입학기획팀, 입학관리팀, 입학사정관팀을 입학팀, 입학사정관팀으로 통합, 조정하다. 기획처에 평가감사실을 신설하다.
- 3월 창업지원센터 1관(327.31m²), 2관(243.21m²)을 철거·멸실하다.
- 4월 부속기관에 한국문화교류원을 신설하다.
- 5월 글로벌서비스학부를 신설하고, 글로벌협력전공(정원 28명), 앙트러프러너십전공(정원 20명)을 설치하다. (2010학년도 제1학기 적용)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라 약학대학 입학정원 80명을 한시적으로 문과대학(인문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 전공, 영어영문학부)에 10명, 이과대학(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수학·통계학부,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에 7명, 생활과학대학(가정·아동복지학부, 생활과학부)에 6명, 사회과학대학(정치행정학부, 언론정보학부)에 5명, 경상대학(경제학부)에 4명, 글로벌서비스학부(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에 48명씩 각각 전환하다.

리더십개발원 부설기관인 창조적리더십연구센터를 폐지하다.

- 6월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농촌진흥청 학·연·산협동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학과는 생명과학과와 식품영양학과로 하다. (2010학년도 제1학기 적용) 입학처에 입학전형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입학사정관팀을 두다. 아시아여성연구소 산하기관인 여성HRD연구센터를 폐지하다.
- 7월 한국음식연구원 산하에 식생활교육연구센터를 신설하다. 한국음식연구원 강의실 158㎡(48평)를 확장하다.
- 9월 명신관 학생식당 135m²(41평)를 확장하다.
- 10월 대학원 독어독문학과를 독일언어·문화학과로 명칭변경하다.
- 12월 부속기관으로 교양교육원을 신설하다.

교양교육원에 일반영어센터, 역량개발센터, 교양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교양교육센터에는 교양교육팀을 두다.

의사소통센터를 교무처에서 교양교육원으로 소속 변경하다.

국제언어교육원 영어교육평가실을 폐지하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71-142 대지 485.7㎡, 건물 641.06㎡를 기숙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 2010년 2월 글로벌서비스학부 부설기관으로 앙트러프러너십센터를 신설하다.
 - 4월 문과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을 한국어문학부로(정원 80명), 인문학부 역사문화학전공을 역사 문화학과로(정원 40명), 인문학부 프랑스언어·문화학전공을 프랑스언어·문화학과로(정원 34명), 인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을 중어중문학부로(정원 90명), 인문학부 독일언어·문화학전공을 독일언어·문화학과로(정원 25명), 인문학부 일본학전공을 일본학과로(정원 40명),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을 문헌정보학과로(정원 30명) 개편하다.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을 나노물리학과로(정원 24명), 자연과학부 화학전공을 화학과로(정원 50명), 생명과학부를 생명과학과로(정원 50명),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을 수학과로(정원 41명), 수학·통계학부 통계학전공을 통계학과로(정원 50명),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을 컴퓨터과학부로 (정원 75명), 정보과학부 멀티미디어과학전공을 멀티미디어과학과로(정원 40명) 개편하고, 의약과학과를(정원 20명) 신설하다.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학전공을 가족자원경영학과로(정원 25명), 가정·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을 아동복지학부로(정원 60명),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을 의류학과로(정원 38명),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을 식품영양학과로(정원 49명) 개편하다.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을 정치외교학과로(정원 39명),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을 행정학과로(정원 37명), 언론정보학부 홍보광고학전공을 홍보광고학과로(정원 47명) 개편하고, 사

회심리학과를(정원 25명) 신설하다.

법과대학 법학부는 정원을 198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하다.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을 경제학부로(정원 85명) 개편하다.

경상대학 경제학부 소비자경제학전공을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경제학과로(정원 25명) 개편하다.

음악대학 기악학부 피아노전공을 피아노과로(정원 38명), 기악학부 관현악전공을 관현악과로(정원 44명) 개편하고, 성악과와 작곡과는 정원을 각각 30명에서 29명으로 조정하다.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을 시각·영상디자인과로(정원 40명), 디자인학부 산업디자 인전공을 산업디자인과로(정원 30명), 디자인학부 환경디자인전공을 환경디자인과로(정원 30명) 개편하다.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은 정원을 28명에서 24명으로, 앙트러프러너십전공은 20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다.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를 독립학부인 영어영문학부로(정원 122명, 테슬전공 24명 포함) 개편하고, 영어영문학부에는 테슬(TESL)전공을 신설하다.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정보방송학전공을 독립학부인 미디어학부로(정원 64명) 개편하다. (2011학년도 제1학기 적용)

- 5월 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신설하다.
- 6월 약학대학에 산업약학과를 계약학과로 신설하다. (2011학년도 제1학기 적용)
-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89-70 대지 209.05㎡, 건물 347.81㎡, 청파동2가 47-5 대지 195.1㎡, 건물 418.4㎡, 청파동2가 48-3, 4, 13 대지 117.4㎡, 건물 107.11㎡를 기숙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 9월 서울 용산구 효창동 2-2 대지 397.7㎡, 건물 656.88㎡를 기숙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영화빌딩 1.453.41m²(440평)를 철거·멸실하다

- 10월 대학원 박사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고 운영학과는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로 하다. (2011학년도 제1학기 적용)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47-20 대지 321.3㎡, 건물 220.74㎡를 기숙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로매입하다.
 - 대강당 3,774.83㎡(1,142평)를 철거·멸실하다.
- 11월 교무처에 교직운영실을 신설하고, 부속기관에 학생군사교육단을 신설하다.
- 12월 대강당 후면 지상주차장 설치(101대) 및 소규모건축물 4개동을 현금인출 부스(5.94㎡), 기숙사경비 초소(3.96㎡), 과학관 경비초소(7.92㎡), 도서관 경비초소(3.96㎡) 준공하다.
- 2011년 2월 정보통신처를 지식정보처로 개편하고, 교무처 교수학습센터를 지식정보처로 소속을 변경하다. 교수학습센터 교육매체·e-learning지원팀과 IT기획운영팀, 정보시스템팀을 폐지하고, 지식정보운영팀, 지식정보시스템팀을 신설하다. 부속기관인 학생군사교육단을 총장 직할부서로 개편하다. 약학대학에 교학팀을 신설하다.
 - 3월 새빛관 2,270.2㎡(687평) RENOVATION을 완료하다.
 - 4월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에 영어영문학전공을 신설하다. (2012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외식경영학과를 신설하다. (2011학년도 2학기 적용)
 - 8월 연구처를 신설하고 교무처 연구지원센터, 연구지원팀을 연구처로 소속을 변경하다. 부속기관으로 숙명역사관을 신설하다. 부설기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부설연구기관인 산업디자인연구소를 디자인연구소로 명칭변경하다.

일반대학원 정보방송학과를 미디어학과로 명칭변경하다. (2012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인력개발정책학을 신설하다. (2012학년도 1학기 적용)

- 9월 숙명역사관을 개관하다. 다목적관 528.46㎡(160평)을 준공하다.
- 10월 교육대학원 교학팀을 신설하다. 부속기관인 숙명역사관을 박물관내 산하기관으로 개편하고, 약학연 구소 산하기관에 세포운명조절연구센터를 신설하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47-21 대지 208.9㎡, 건물 384.93㎡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 12월 안보학연구소를 신설하다.
- 2012년 1월 국제관계대학원 인간안보및국제기구전공을 글로벌안보협력전공으로 스포츠 외교전공을 스포츠및공 공외교전공으로 변경하다. (2012학년도 2학기 적용)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48-2, 12 대지 408.3㎡, 건물 316.11㎡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 1월 창업보육센터 2,187.87m²(661.83평)를 준공하다.
 - 2월 연계전공으로 글로벌환경학전공을 신설하고 안보군사학전공을 안보학전공으로 변경하다.
 - 3월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보육센터를 연구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다.
 - 5월 통합인문학연구소를 신설하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문화관광학과를 신설하다. (2012학년도 2학기

적용)

9월 교육언어학박사 황선혜 선생 제18대 총장에 취임하다.

10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홍보광고학과를 신설하다. (2013학년도 적용)

2013년 1월 명신관 1,006.14㎡(304.36평)을 증축하다.

2월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 생명시스템학과를 신설하다.(2013학년도 적용)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3직할부서, 8처, 10부속기관, 16부설기관, 18부설연구소, 1산학협력단을 4직속기구, 8처, 7부속기관, 11처 산하 부설기관, 17부설연구소로 개편하다.

직할부서를 직속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학협력단을 직속기구로 개편하다. 직속기구에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미래전략실 내에 미래전략팀을 두다. 숙명리더십개발원을 폐지하다.

지식정보처 교수학습센터를 교무처로 소속을 변경하다.

연구처 연구지원센터에 연구기획팀을 신설하고, 부설기관인 숙명앙트러프러너십센터를 연구처 창업 보육센터 내 앙트러프러너십지원팀으로 편제를 변경하다.

부설기관인 한국음식연구원을 연구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개편하다.

입학처 입학전형개발센터를 입학기획관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학기획관리센터 내에 입학사정 관팀과 입학팀을 두다.

학생처 학생문화복지팀을 학생지원팀으로,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서비스팀을 장학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학생처에 사회봉사센터를 신설하고, 사회봉사실을 사회봉사팀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장애학생지원팀으로 편제를 변경하여 사회봉사센터에 두다.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숙명미디어센터를 신설하다. 부설기관인 영상미디어센터를 영상미디어팀으로 편제를 변경하고, 숙대신보사와 영상미디어팀을 숙명미디어센터에 두다.

부설기관인 보건진료소를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인 보건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다. 부속기관인 기숙사와 부설기관인 학생생활상담소, 성평등상담소를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개편하다.

사무처 SOC총무인사팀을 총무인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설기관인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 유아원을 사무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개편하다.

기획처 전략기획팀을 조직운영팀으로, 평가감사실을 평가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다.

대외협력처에 국제협력센터를 신설하고, 국제교류팀과 국제학생지원팀을 두다.

부설연구기관인 아태여성정보통신원과 부설기관인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대외협력처 산하 부설 기관으로 개편하다.

지식정보처를 관리정보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통신센터를 신설하다. 지식정보운영팀을 정보운영 팀으로, 지식정보시스템팀을 정보시스템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통신센터에 두다.

사무처 건설팀과 시설지원센터 시설지원팀을 관리정보처로 소속을 변경하고, 건설지원팀과 시설관리 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관리정보처에 실험동물실과 공동기기실을 통합하여 실험자원관리팀을 신설 하다.

부설기관인 가정경영실습관을 관리정보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개편하다.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개편하고, 장서개발팀, 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정보관리팀, 전자정보지원팀, 법학전문도서관 법학전문도서팀을 학술정보개발팀, 학술정보서비스팀, 디지털정보팀, 법학전문도서팀 으로 개편하다.

박물관, 정영양자수박물관, 문신미술관, 숙명역사관을 숙명문화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다. 박물관 학예 팀을 폐지하고 숙명문화원에 문화기획팀을 신설하다.

취업경력개발원의 취업경력개발팀을 취업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취업경력개발원에 경력개발팀을 신설하다.

교양교육원을 리더십교양교육원으로, 역량개발센터를 리더십역량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양교육원 소속의 교양교육센터는 폐지하다.

대학원 교학팀을 신설하다.

부속기관인 연수원을 폐지하다.

- 5월 SM Global 'I' Promise 선포식을 거행하다.
- 6월 대학원 생명과학과를 폐지하다. (2013학년도 2학기 적용)
- 8월 정책 산업대학원을 정책산업대학원으로 변경하다.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패션코디네이션디자인전공,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리빙스타일디자인 전공, 음악치료대학원 치유음악목회전공, TESOL대학원 CALL전공, 사회교육대학원 골프매니지먼트 전공을 폐지하다.

국제관계대학원 국제홍보전공과 스포츠및공공외교전공을 국제관계대학원 국제홍보및공공외교전공으로 통합하다.

정책산업대학원 소비자경제학전공을 소비자경제금융전공으로, e비즈니스전공을 IT융합비즈니스전공으로,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여성인적자원개발전공을 인적자원개발전공으로, 원격대학원 원격교육 공학전공을 교육공학전공으로, 원격대학원 실버산업전공을 실버비즈니스전공으로 변경하다.

사회교육대학원 미용예술전공을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미용예술전공으로, 사회교육대학원 리더십교육전공을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리더십교육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다.

워격대학원 음악치료전공과 창의교육비즈니스전공을 신설하다. (2014학년도 1학기 적용)

- 10월 학생처 산하 보건의료센터 내에 건강관리팀과 부속의원을 신설하다.
- 11월 국제6A관(107.11㎡), 국제6E관(316.11㎡)를 철거·멸실하다.
- 12월 교무처에 디지털휴머니티즈센터를 신설하다.
- 2014년 2월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4직속기구, 8처, 7부속기관, 처산하 11부설기관, 17부설연구소를 4직속기구, 8 처, 7부속기관, 처산하 10부설기관, 14부설연구소로 개편하다.

미래전략실을 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다.

연구처 창업보육센터 내 앙트러프러너십지워팀을 연구처 내 앙트러프러너십센터로 개편하다.

입학처 입학기획관리센터 내 입학팀과 입학사정관팀을 입학팀으로 통합하다.

기획처 조직운영팀을 전략기획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을 발전기금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대외협력처 국제협력센터 내 국제교류팀과 국제학생지원팀을 국제협력팀으로 통합하다.

사무처 산하 부설기관인 르 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 교학팀을 교무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다.

- 3월 사무처 산하 부설기관인 유아원을 폐지하다.
- 10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 인력개발정책학을 신설하다. (2015학년도 1학기 적용) 교육대학원 내 교육행정전공, 역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을 폐지하다. (2015학년도 1학기 적용)
- 12월 여성건강연구소 산하 부설기관인 SIS 면역학연구센터를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다.
- 2015년 1월 부속연구기관으로 ICT융합연구소를 신설하다.
 - 2월 이과대학 생명과학과와 의약과학과를 생명시스템학부(정원 59명)로 통합하다. 공과대학을 신설하고, 이과대학 멀티미디어과학과를 공과대학 IT공학과(정원 40명)로 개편하고, 공 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정원 60명)를 신설하다. (2016학년도 1학기 적용)
 - 4월 취업경력개발원에 IPP센터를 신설하다.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한국과학기술원 학·연·산협동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학과는 자연과학 계열 전체학과로 하다. (2015학년도 2학기 적용)
 - 6월 대외협력처의 발전기금팀을 발전협력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다.
 - 7월 관리정보처 시설관리팀과 건설지원팀을 시설관리팀으로 통합하다. 취업경력개발원 취업지원팀과 경력개발팀을 취업경력개발팀으로 통합하다.
 - 9월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가정관리학과를 가족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식품의약품안전청 학·연·산 협동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학·연·산 협동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IT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를 신설하고(2016학년도 1학기 적용), 대학원 석사과정에 사회심리학과를 신설하다.
 - 11월 국제관계대학원 기후화경융합전공을 신설하다.

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 야간과정 르꼬르동블루호스피탈리티경영전공을 MBA로 변경취업경력개발원 산하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신설하다.

- 12월 공과대학에 교학팀을 신설하다.
- 2016년 2월 사무처 구매팀과 관재팀을 구매관재팀으로 통합하다. 기획처 전략기획팀과 평가관리실을 전략기획팀으로 통합하다.
 - 4월 취업경력개발원 산하 듀얼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다.
 - 5월 리더십교양학부와 리더십교양교육원을 폐지하고 기초교양대학을 신설하다.

정책산업대학원(정원 42명) 소비자경제금융전공을 폐지하다.

임상약학대학원(정원 20명) 사회약학전공을 폐지하고 임상약학전공을 약료경영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다.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정원 56명) 커리어상담전공을 신설하다. (2015학년도 2학기 적용) 숙명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을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간과정 르꼬르동블루호스 피탈리티경영전공을 MBA로 변경하다.

이과대학 컴퓨터과학부를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과학전공(정원 60명), 소프트웨어융합전공(정원 30명)으로, 이과대학 나노물리학과를 공과대학 ICT융합공학부 응용물리전공(정원 40명)으로, 공과대학 IT공학부를 공과대학 ICT융합공학부(IT공학전공)(정원 60명)으로 개편하고 공과대학 화공 생명공학부는 증원(정원 63명)하다.

공과대학 기초공학부(정원 80명), ICT융합공학부 전자공학전공(정원 40명), 기계시스템학부(정원 50명)를 신설하다.

기초교양대학 내 기초교양학부, 융합학부를 신설하다. (2017학년도 1학기 적용)

- 9월 경영학박사 강정애 선생 제 19대 총장에 취임하다. 학교 인접 토지(청파동 2가 47-4, 49.9m2)를 매입하다.
- 12월 교육용 기본 재산(갈월동 에이트리움-고려 2층, 1,170,92㎡, 연구소)을 매각하다.
- 2017년 2월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4직속기구, 8처, 6부속기관, 11처 산하 부설기관, 17부설연구소를 4직속기구, 4직속사업단, 8처, 2부속기관, 5부속교육기관, 9처 산하 부설기관, 17부설연구소로 개편하다. 산학협력단을 연구처와 통합하고 경영지원팀, 연구개발혁신팀, 연구관리팀, 공동기기운영팀, 기술사업화팀, 창업보육센터, 젠더이노베이션센터를 두다.

직속사업단으로 BK21플러스지원사업단, 프라임사업단, CROSS캠퍼스추진단, LINC+추진사업단을 두다.

기획처 전략기획팀, 예산기획팀을 기획팀, 예산팀으로 명칭변경하고, 대학혁신평가실을 신설하다. 교무처 교무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직운영실을 교무팀, 학사팀, 교원양성센터로 명칭변경하고, 교수학습센터는 교육혁신센터로 개편하여 교육혁신팀, 교수학습지원팀을 두다.

학생처 사회봉사센터를 학생지원팀으로 통합하다.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 기숙사를 학생생활관으로 개편하고, 보건의료센터 산하 건강지원팀을 폐지하며, 숙명미디어센터는 미디어센터로 명칭변경하고, 영상미디어팀을 폐지하다.

취업경력개발원을 경력개발처로 개편하고 경력개발팀,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팀을 두며, 연구처산하 부설기관 앙트러프러너십센터는 경력개발처 산하로 편제하다.

사무처 총무인사팀, 구매관재팀을 직원인사팀, 총무구매팀으로 개편하다.

관리정보처 정보통신센터 정보운영팀, 정보시스템팀을 정보통신팀으로 통합하고, 관재팀을 신설하다. 중앙도서관 법학전문도서팀을 폐지하다.

부속교육기관으로 글로벌사회교육원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한국음식연구교육 원,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를 편제하다.

- 3월 교육용 기본 재산(공덕동 43외 2채, 179.9㎡, 외부 기숙시설)을 매각하다. 학교 인접 토지(청파동 2가 47-4, 49.9㎡)를 매입하다.
- 5월 Sookmyung Renaissance 선포식을 거행하다.
- 6월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감사팀을 신설하다. 아시아여성연구소와 다문화통합연구소를 아시아여성원구원 으로 통합하다.
- 7월 연계전공으로 기술인문융합전공을 신설하다.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전자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를 신설하고, 기악학과를 2개 전공(피아노과, 관현악과)으로 분리·신설하다. (2018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학과간협동과정으로 헬스산업학을 신설하다. (2018학년도 2학기 적용) 특수대학원 학제개편을 통해 총 7개 대학원, 19개 학과로 개편하다. TESOL 대학원과 국제관계대학원을 TESOL·국제대학원으로 통합하고 글로벌서비스학과, 기후환경융합학과, TESOL 학과를 두다.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사회교육대학원을 문화예술대학원으로 통합하고 전

원을 TESOL·국제대학원으로 동압하고 글로벌서비스학과, 기우완경융압학과, TESOL 학과를 누다.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사회교육대학원을 문화예술대학원으로 통합하고 전통예술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예술교육학과를 두다. 정책산업대학원을 정책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를 두다.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을 인적자원개발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적자원정책학과, 커리어개발학과를 두다. 심리치료대학원을 신설하고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를 두다.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전공은 임상음악치료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다. 원격대학원 아동문화콘텐츠전공은 폐지하고, 전공 명을 향장미용학과, 교육공학과, 영·유아교육학과, 실버비즈니스학과, 음악치료학과, 창의영재콘텐츠학과로 변경하다.(2018학년도 2학기 적용)

- 8월 첨단소재시스템연구소를 신설하다.
- 9월 교육혁신원을 직속기구로 신설하고 교수학습센터, 교육혁신연구센터를 두다. 창업지원단을 신설하여 창업보육센터, 앙트러프러너십센터, 창업지원팀을 두다. 기획처에 신사업기획단을 신설하다. 기획처 대학혁신평가실을 평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가실 산하에 평가팀을 신설하다.
- 12월 평생교육원을 미래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다.
- 2018년 2월 교육혁신원 산하에 비교과관리센터를 신설하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세라믹기술원 학연산협동과정을 신설하다.(2018학년도 2학기 적용)
 - 4월 프라임사업단 산하에 공학기초교육센터를 신설하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글로벌서비스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신설하다.(2019학년도 1학기 적용) 5월 총장직속기구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신설하다.

8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전자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를 신설하다.(2019학년도 1학기 적용)

9월 부총장직을 신설하다.

행정조직을 6직속기구, 7처, 1원, 1단, 2부속기관, 4부속교육기관, 처 산하 13부설기관, 16부설연구 기관으로 개편하다.

감사을 법무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외협력처를 대외협력본부 및 국제처로 분리 신설하다. 대외협력본부는 총장직속기구에 편제하여 산하에 발전협력팀과 홍보실에서 개편된 커뮤니케이션팀을 두고, 국제처는 산하에 국제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을 편제하다.

인권센터를 총장직속기구에 신설하여 산하에 인권상담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성평등상담소를 편제하다.

산학협력단 소속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승격, 개편하다.

총장직속사업단으로 BK21플러스지원사업단, 프라임사업단, CROSS캠퍼스추진단, LINC+추진사업단, 캠퍼스타운사업단을 두다.

학생지원팀과 장학팀을 학생지원센터로 통합·개편하고, 사무처와 관리정보처를 통합하여 사무·관리처로 개편하다.

교육혁신원과 창업지원단을 부총장 직속기구로 편제하다.

- 11월 특수대학원 TESOL·국제학대학원 글로벌서비스학과를 국제관계학과로 명칭변경하다.(2019학년도 1학기 적용)
- 12월 교육혁신원을 총장직속기구로 이동하고, 산하에 교육혁신사업단을 신설하다. 교육혁신원 교육연구센터를 대학IR센터로 명칭변경하다. 산학협력단 산하에 CROSS캠퍼스운영센터를 신설하다.
- 2019년 2월 특수대학원 인적자원정책학과와 인적자원개발전공을 인적자원개발학과와 인재개발전공으로 창의영 재콘텐츠학과, 창의영재콘텐츠전공을 창의콘텐츠학과, 창의콘텐츠전공으로 명칭변경하다. 프라임사업단 산하 공학기초교육센터를 교육혁신원 산하로 두다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사회봉사센터 신설하다.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빅데이터분석융합학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하다.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기후환경에너지학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하다.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개발팀, 학술정보서비스팀, 디지털정보팀을 학술정보지원팀, 학술정보운영팀으로 개편하다

4월 기획처 소속 기획팀, 평가팀을 기획팀으로 통합하다.

사무·관리처 소속 시설관리팀을 시설종합관리센터로 승격, 개편하다.

공과대학 교학팀 폐지하다.

학생처 산하 학생생활상담소가 숙명행복상담센터로 승격,개편하다.

2020학년도 문과대학 문화관광학부를 문화관광외식학부로 명칭변경하다

교육혁신원 산하 교육현신사업단을 부총장 직속기구 대학혁신단으로 이동, 개편하다.

- 6월 산학협력단 산하에 미래기술융합ICC를 신설하다.
- 9월 입학처 산하 입학기획관리센터를 폐지하고, 산하에 1팀(입학팀)으로 개편하다.

경력개발처산하 경력개발팀,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팀을 통합하여 인재개발센터로 승격, 개편하다.

국제처 산하 국제언어문화교육원과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운영팀을 숙명글로벌어학원과 숙명글로벌어학원운형팀으로 명칭변경하다,

국제처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를 폐지하고 업무는 명칭변경된 숙명글로벌어학원 운영팀으로 이관하다.

교육혁신원 산하 비교과관리센터를 대학IR센터에 업무이관 후 통합하였으며, 공학기초교육센터는 폐지하다.

부설연구기관 경제경영연구소를 경제경영연구센터로 전환하다.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으로 문화예술교육학(학과간 협동과정)을 신설하다.(2020학년도 전기모집 부터 적용)

- 12월 국제처 숙명글로벌어학원운영팀을 숙명글로벌어학원교학팀으로 명칭변경하다.
- 2020년 3월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 미디어센터를 폐지하고, 대외협력본부 산하 커뮤니케이션팀과 통합하다. 미디어센터 산하에 있었던 학생 언론 자치 단체인 숙대신보사, 교육방송국(SBS)는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그대로 두다.

창의융합디자인연구소를 신설하다.

- 7월 산학협력단 산하 젠더이노베이션센터를 폐지하고, 산학협력단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혁신선도대학사 업단을 신설하다.
- 8월 연계전공으로 글로벌지식경영전공을 신설하다.

- 9월 문헌정보학박사 장윤금 선생 제 20대 총장에 취임하다.
- 10월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총장직속기구 교육혁신원 산하에 신설하다. 디지털정보혁신처를 신설하였으며, 산하로 데이터전략팀을 신설, 사무·관리처 산하 정보통신팀을 디지털인프라팀으로 개편 후 디지털정보혁신처 산하로 이동하다. 부설연구기관으로 음악교육연구소를 신설하다.
- 11월 부설연구기관으로 교육연구소를 신설하다.
- 2021년 1월 부총장직속기구의 사업단 중 BK21플러스지원사업단을 BK21총괄사업단으로 명칭변경하다.
 - 2월 총장직속기구의 대외협력본부를 대외협력실로 개편하다. 국제처의 국제팀을 외국인 학생 유치·입학·지원 등 통합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국제협력팀과 유학생 서비스팀으로 개편하다.
 - 3월 글로벌융합대학을 신설하다.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자연과학계열 물리학과를 공학계열 응용물리학과로 계열 및 학과명을 변경하다. (2021학년도 2학기)
 - 7월 부총장직속기구 산하 사업단으로 빅데이터혁신공유사업단을 신설하다. 부설연구기관인 아동연구소를 폐지하다.
 - 8월 경력개발처 산하 부설기관인 IPP센터, 듀얼공동훈련센터를 폐지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신설하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전자계산교육전공을 컴퓨터교육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AI융합교육 전공을 신설하다.
 - 10월 숙명혁신자문위원회를 폐지하다. 특수대학원 원격대학원 영·유아교육학과를 영유아교육학과로 명칭 변경하다. 일반대학원에 작곡학과 박사과정을 신설하다. (2022학년도 2학기 적용)
 - 12월 디지털휴머니티센터를 총장직속기구로 신설하다.
- 2022년 2월 기획처에 평가실을 신설하다.
 - 4월 경력개발처 산하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다. 공과대학 첨단분야 학과 신설을 위해 ICT융합공학부의 IT공학전공(정원 60명)을 인공지능공학부(정원70명)으로 변경하고, ICT융합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정원40명)과 응용물리전공(정원40명)을 첨단소재·전자융합공학부(정원90명)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과 신소 재물리전공을 두다.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의 컴퓨터과학전공(정원60명)과 소프트웨어융합전 공(정원 30명)을 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과학전공,데이터사이언스전공)으로 변경하고 정원100명을 두다. (2023학년도 적용)
 - 5월 부총장직속기구 산하 사업단으로 SW중심대학사업단을 신설하다. 산학협력단 산하 혁신선도대학사업단을 폐지하다.
 - 6월 총장직속기구로 LINC3.0사업단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LINC3.0추진팀을 두다. 부총장직속기구 산하 LINC+추진사업단을 폐지하다. 산학협력단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지원팀, 산학·연구기획팀, 연구감사팀, 산학협력진흥본부, 연구 진흥본부를 설치하고, 산학협력진흥본부 산하에 기술사업화센터, 산학협력교육센터, 산학공유·협 업센터를, 산학공유·협업센터 산하에는 미래기술융합ICC와 CROSS캠퍼스운영센터를 두며, 연구 진흥본부산하에 연구개발혁신팀, 연구관리팀, 공동기기운영팀을 두다. 사무·관리처 산하에 안전관리팀을 신설하다.
 - 부설연구기관 여성건강연구소를 여성건강연구원으로 변경하다. 10월 부설연구기관 창의융합디자인연구소를 창의융합연구소로 변경하다.

설립자 및 역대 이사장

구분	성명	재임기간
설립자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설립청원자	엄주익(嚴柱益)	
초대 교장	이정숙(李貞淑)	1906. 5 ~ 1935. 5
이사(평의원대표)	후치자와 요시에(淵澤 能惠)	1912. 1 ~ 1936. 2
이사장	시노다 지사쿠(篠田 治策)	1937. 2 ~ 1945. 8
아사장	방응모(方應謨)	1945. 8 ~ 1946. 6
아사장	윤홍섭(尹弘燮)	1946. 6 ~ 1950. 11
아사장	조동식(趙東植, 법학박사)	1950. 11 ~ 1954. 11
아사장	이기붕(李起鵬)	1954. 11 ~ 1960. 4
아사장	성의경(成義敬)	1960. 6 ~ 1962. 3
아사장	정석해(鄭錫海, 철학박사)	1962. 3 ~ 1965. 5
직무대행	이숙종(李淑鍾, 문학박사)	1965. 5 ~ 1966. 5
직무대행	고재호(高在鎬, 변호사)	1966. 5 ~ 1967. 2
직무대행	조재천(曺在千, 변호사)	1967. 2 ~ 1967. 6
직무대행	정경모(鄭庚謨, 변호사)	1967. 6 ~ 1968. 4
아사장	유봉영(劉鳳榮, 문학박사)	1968. 5 ~ 1972. 4
아사장	이은상(李殷相, 문학박사)	1972. 4 ~ 1976. 4
직무대행	차낙훈(車洛勳, 법학박사)	1976. 4 ~ 1976. 5
이사장	이은상(李殷相, 문학박사)	1976. 5 ~ 1977. 5
직무대행	차낙훈(車洛勳, 법학박사)	1977. 5 ~ 1977. 6
아사장	태완선(太完善, 경제학박사)	1977. 6 ~ 1982. 12
직무대행	유봉영(劉鳳榮, 문학박사)	1982. 12 ~ 1983. 10
이사장	정재각(鄭在覺, 문학박사)	1983. 10 ~ 1988. 5
직무대행	송지영(宋志英, 문학박사)	1988. 5 ~ 1988. 6
이사장	송지영(宋志英, 문학박사)	1988. 6 ~ 1989. 4
직무대행	양희경(梁會卿, 변호사)	1989. 4 ~ 1989. 6
직무대행	김숙배(金淑培)	1989. 6 ~ 1989. 7
이사장	윤태림(尹泰林, 철학박사)	1989. 7 ~ 1991. 2
직무대행	김두현(金斗鉉, 변호사)	1991. 3 ~ 1991. 11
이사장	이한빈(李漢彬, 철학박사)	1991. 11 ~ 1995. 5
직무대행	이귀명(李貴明)	1995. 5 ~ 1995. 6
이사장	이세웅(李世雄, 경제학박사)	1995. 6 ~ 1998. 4
직무대행	이상숙(李相淑 명예경영학박사)	1998. 4 ~ 1998. 10
이사장	이용태(李龍兌, 이학박사)	1998. 10 ~ 2013. 2
이사장	손병두(孫炳斗, 경영학박사)	2013. 3 ~ 2013. 6
이사장	이돈희(李敦熙, 교육철학박사)	2013. 7 ~ 2017. 1
이사장	이승한(李承漢 도시공학박사)	2017. 1 ~ 2022 6
이사장	박인국(朴仁國), 법학석사)	2022. 6 ~ 현재

역대 교장·학장·총장

₹	분		성명	재임기간
명신여학교		교장		1906. 5 - 1908. 12
명신고등여학교		"		1908. 12 - 1909. 5
숙명고등여학교		"	李貞淑	1909. 5 - 1911. 11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		1911. 11 - 1935. 5
"		"		1935. 7 - 1939. 4
숙명여자전문학교		"	小田省吾	1939. 4 - 1945. 8
"		"		1945. 11 - 1948. 5
숙명여자대학		학장	任 淑 宰(법학박사)	1948. 5 - 1955. 3
숙명여자대학교	제1대	총장		1955. 3 - 1958. 5
"	제2대	"	金 斗 憲(문학박사)	1958. 9 - 1960. 6
"	제3대	"	金 斗 鍾(의학박사)	1960. 7 - 1961. 9
"	총장서리	"	李 能 雨(문학박사)	1962. 4 - 1963. 6
"	제4대	"	金 洵 植(경제학박사)	1963. 6 - 1965. 1
"	제5대	"	尹 泰 林(철학박사)	1965. 1 - 1969. 1
"	제6대	"	李 寅 基(문학박사)	1969. 2 - 1973. 2
"	제7대	"	金 敬 洙(법학박사)	1973. 2 - 1977. 2
"	제8대	"	徐 明 源(교육학박사)	1977. 2 - 1977. 3
n n	제9대	"	車 洛 勳(법학박사)	1977. 7 - 1981. 7
n,	제10대	"	소 그 제생하다.	1981. 8 - 1985. 8
"	제11대	"	金 玉 烈(정치학박사)	1985. 8 - 1989. 8
"	제12대	"	鄭 奎 善(약학박사)	1990. 3 - 1994. 3
"	제13대	"		1994 . 3 - 1998. 3
"	제14대	"	李 慶 淑(정치학박사)	1998. 3 - 2002. 3
"	제15대	"		2002. 3 - 2006. 2
"	제16대	"		2006. 3 - 2008. 8
"	제17대	"	韓 英 實(이학박사)	2008. 9 - 2012. 8
"	제18대	"	黃 善 蕙(교육언어학박사)	2012. 9 – 2016. 8
"	제19대	"	姜 貞 愛(인적자원경제학박사)	2016. 9 – 2020. 8
"	제20대	"	張 倫 昑(문헌정보학박사)	2020. 9 — 현재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 제 정: 1964. 1. 25.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

■ 개 정: 2022. 11. 17.■ 관리부서: 법인 사무국

■ 관련부서 : 기획처 기획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교육의 근본이념에 의거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3,/2016.7.2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 1. (삭제 2013.3.13.)
- 2. (삭제 2013.3.13.)
- 3. 숙명여자대학교
- 4. 숙명여자대학교 부속 풍무숙명유치원 (신설2016.7.26.)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에 둔다. (개정 2019.09.19.)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7.12.06./개정 2012.9.25)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산·결산보고 및 공시) (신설 2007.1.3)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예산 결산 자문 위원회(삭제 2007.1.3)

제13조 (예산 · 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2007.1.3)

제14조 (위원회의 조직) (삭제 2007.1.3)

제15조 (위원장선출 및 직무) (삭제 2007.1.3)

제16조 (회의) (삭제 2007.1.3)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2007.1.3)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개정 2007.12.06)

-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19.09.19.)
 - 2. 감사 2인 (개정 2019.09.19.)
- ② 제1항의 이사 중 2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개정 2019.09.19.)
-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이사 4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22.)
 - 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12.9.25)
 - ② (삭제 2006.6.1)
-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개정 2006.1.4)
 -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개방이사·감사의 자격)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법인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신설 2007.1.3)
-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신설 2007.1.3)
 -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12.06)
 - ③ (삭제, 2007.12.06)

- ④ (삭제. 2007.12.06)
- ⑤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6.)
- 제20조의4(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신설 2007.1.3/ 조 명칭변경 2007.12.06)
 - ① 제18조 제2항의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7.12.06)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06.)
 -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개정 2013.3.13.)
 - 2. 숙명여자대학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개정 2013.3.13.)
 - 3. (삭제 2013.3.13.)
 - 4. (삭제 2013.3.13.)
 - ③ 추천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개방이사 추천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2.06)
-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 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3)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 ③ 이사정수의 3분의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7.1.3)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7.1.3)
 -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며,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3/ 개정 2007.12.06)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1.3)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개정 2006.1.4)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삭제 2009.12.23)
-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4조(이사장직무대행자의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제9조에 관한 사항)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7.1.3/2009.12.23)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제27조(이사장 등에 대한 보수) 이사장과 수익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 또는 상근 감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절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0.14.)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9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7.1.3)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3.)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9.25.)
- 제30조(이사회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2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3일 전까지 대학홈페이지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공개해야한다. 다만,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인 운영상 대외비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항 신설 2018.4.25.)

-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항 번호 변경 2018.4.25.)
- 제32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신설 2007.1.3)
 - ① 이사회는 개의, 회의,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 임원 및 직원, 표결 수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한다. (신설 2018.3.6.)
 - ②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항 번호 신설 및 개정 2018.3.6./개정 2021.04.29)

제4장 수익사업

- 제33조(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농토의 임대 또는 직영
 - 2. 대지 또는 가옥의 임대
 - 3. 임 업
 - 4. 무형 재산권 임대업 (호신설 2021.02.08.)
 - 5.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호신설 2021.02.08.)
-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경영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에 둔다. (개정 2019.09.19.)
-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개정 2013.3.13.)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9.09.19.)
-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9.19.)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관이름변경 2020.10.14.)

- 제39조(임용)(조이름변경 2020.10.14.)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임기와 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3/2007.12.06./2012.12.22./2013.3.13./2016.7.26./2020.04.07./2020.10.14)
 - 1. 대학교의 총장은 이 법인이 별도로 정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추천된 후보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6.7.26./개정 2020.04.07./2020.10.14)
- 2. 유치원의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6.7.26./개정 2020.04.07./2020.10.14)
- ② 대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03.6.17./2020.10.14)
 - 1. 근무기간
 -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나, 부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다.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9.25.)
 - 라. (신설 2019.09.19./삭제 2021.12.16)
 - 2. 보수: 정관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급여
 -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 4. 업적 및 성과약정: 연구실적·산학협력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9.)
 -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6.17./개정 2020.10.14)
 - 1. 교수 정년까지
 - 2. 부교수 정년까지
 - 3. 조교수 4년
 - 4. 삭제(2012.9.25.)
- ④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교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3.6.17./개정 2020.10.14)
- ⑤ 대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신설 2003.6.17)
- ⑥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유치원의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전에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13.3.13./2016.7.26.)
- ⑦ 대학교의 부총장·학장 및 대학원장등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개정 2013.3.13.)
- ⑧ (삭제 2019.09.19)
- ⑨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7./2020.10.14)
- ⑩ 총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7./2020.10.14)
- 제39조의2(비정년전임 및 비전임 교원의 임용)(조이름변경 2020.10.14./2021.12.16) ① 대학교육기관의 비정년 전임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비정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7.30./개정 2020.10.14.)
- ② 대학교육기관의 비전임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16.)
- 제39조의3(전형결과 공개) (신설 2007.1.3./삭제 2013.3.13)

제2관 신분보장

-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개정 2007.12.06./ 2014.9.25./2021.02.08)
 -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9.09.19.)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 5호에 해당된 때
 - 11.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 (신설 2002.9.7)
 - 12.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연구년 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설 2002.9.7)
-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자녀 각 1명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06./ 2008.05.13./2021.02.08)
 -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40조 제 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40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직무의 수행을 종료하는 당해 학기의 최종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2.9.7)
 - 11. 제4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02.9.7)
-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 ②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9.7./ 2016.03.01)
- 제44조(직위해제) (개정 2011.12.21./조이름변경 2021.04.29)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20.10.14.)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어려운 자 (신설 2020.10.1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6.03.01.)
 -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20.10.14.)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 ⑥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9.)
 - ⑦ (개정 2020.10.14./삭제 2021.04.29.)
- 제44조의2(면직) (조신설 2021.04.29.)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4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조신설 2021.04.29.)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사립학교법」제61조 제2항에 따른 파면·해임·정직의 징계(이하"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제60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 교직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7.26.)
-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4.)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6조의2(명예퇴직) ①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중 재직 시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는 자격 기준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할 수 있다.
- 제46조의3(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 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02.9.7./ 2012.9.25./2019.09.19./2020.10.14)
 -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 3.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개정 2007.1.3./ 삭제 2013.3.13)
 - 5. (삭제 2013.3.13.)
 - 6. (신설 2007.1.3./삭제 2013.3.13.)
 -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 1. 연구실적, 산학협력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개정 2019.09.19.)
 -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7.12.06./2019.09.19)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학교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2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 제55조(교원장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의 장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04.28.)
 - ② 교원장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을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2019.09.19./2022.04.28.)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5. (신설 2022.04.28./삭제 2022.11.17.)
-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2.7.)
-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법인이사, 외부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 ⑥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17.)
-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장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장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8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58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59조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8조의3(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 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0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2.7./2020.10.14)
- ④ 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교원장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1조(교원장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장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장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 제62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2011.12.21.)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 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7.2.7./2022.04.28.)
 - 1. 징계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신설 2017.2.7./개정 2022.04.28.)
 - 2.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신설 2017.2.7./개정 2022.04.28.)
 - 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신설 2022.04.28.)
 - 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신설 2022.04.28.)
 -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신설 2017.2.7./개정 2022.04.28.)
- 제6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 제64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수 있다.
 -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6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1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일반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제65조의2(계약직원의 임용) 계약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계약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7.30/2016.7.26.)
- 제66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01.)
- 제68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징계 및 재심요청)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 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 제70조(법인의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 ② 법인사무국에는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1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명한다. (개정 2013.4.23.)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2조(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명한다. (개정 2013.4.23.)
 -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④ 대학원에 교학부장을 둘 수 있고 교학부장은 각 전공주임교수 업무를 관장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4.23.)

제73조(총장직속기구) (제목개정 2013.4.23.)

- ① 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 법무감사실, 대외협력실, 인권센터, 산학협력단, 학생군사교육단, 교육혁신원 및 디지털휴머니티센터를 두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9.7./2003.3.11./2003.8.27./2003.9.29/2004.10.29/2011.2.8/2013.4.23/2014.2.6/2017.2.7/2017.9.8/2018.9.1/2018.11.21/2021.02.08/2021.12.16)
- ② 총장 직속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산하에 센터, 실 및 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4.23./ 2017.2.7.)
- ③ 비서실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3.4.23.)
- ④ 법무감사실장, 대외협력실장, 인권센터장 및 디지털휴머니티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조이동 2013.4.23. / 개정 2014.2.6. / 2018.9.1. / 2021.02.08. / 2021.12.16)
- ⑤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7.9.8./개정 2018.9.1./2018.11.21./2021.02.08)
- ⑥ 산학협력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이동 2013.4.23./ 항 번호 변경 2017.9.8.)
- 제73조의2(부총장 직속기구) (조신설 2019.09.19.) ① 부총장 직속기구으로 창업지원단, 대학혁신단, 국고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단, 그리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부총장 직속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산하에 센터, 실 및 팀을 둘 수 있다.
 - ③ 사업단에는 단장 및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제73조의3(행정조직) (신설 2013.4.23.)

-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경력개발처, 사무·관리처, 국제처, 디지털정보혁신처를 둔다. (조이동 2013.4.23./ 개정 2017.2.7./2018.9.1./2019.09.19./2020.10.14)
- ② 각 처에는 센터, 실 및 팀을 둘 수 있으며, 처 및 센터에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02.3.4/2003.8.27/2003.9.29/2003.12.17/2004.10.29./조이동 2013.4.23)
- ③ 행정부서의 보직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조이동 2013.4.23)
- 1. 각 처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사무·관리처장 및 기획처장은 참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2013.4.23/2018.9.1.)
 - 2. (삭제 2019.09.19)
- 3.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사무·관리처, 기획처의 부처장은 참사 이상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2003.12.17/ 2004.10.29./ 2013.4.23/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9.1.)
- 4. 각 처의 센터장, 실장, 소장, 단장 및 처 산하 부설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참사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신설 2018.9.1.)
- 5. 각 센터에는 부센터장 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센터장 또는 팀장은 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8.9.1./개정 2019.09.19)
- 6. 각 실 및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2004.10.2./ 2013.4.23/호 번호 변경 및 개정 2018.9.1.)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2.17./ 조이동 및 개정 2013.4.23)

제74조(단과대학 등의 행정조직) (제목개정 2013.4.23.)

- ① 대학교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개정 2013.4.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8.27./ 2013.4.23)
- ③ (삭제 2013.4.23.)

제75조(부속기관 등) (제목개정 2013.4.23.)

①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중앙도서관·숙명문화원을 두고, 부속교육기관으로 글로벌사회교육원을 둔다.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과 각 처에는 산하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23./2013.8.13./2016.7.26./ 2017.2.7./2018.3.6./2018.4.25./2018.9.1.

/2018.11.21./2019.09.19./2021.02.08)

- ② (개정 2013.4.23./ 2013.8.13./ 2014.2.14./ 2016.03.01./ 삭제 2017.2.7.)
- ③ 부속기관 등에는 각각 기관장을 두며, 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개정 2013.4.23./항번호변경 2013.8.13)
- ④ 부속기관 등의 기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속기관 등에 부서를 둘 수 있다. 부서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임명하되, 그 업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23/항번호변경 2013.8.13)
- ⑤ 부속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23/항번호변경 2013.8.13)
- 제75조의2(개방형 직위) 제72조 내지 제75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격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의 장은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7.30/ 개정 2007.1.30)

제76조(도서관) (삭제 2013.4.23.)

제3절 고등학교 (삭제 2013.3.13.)

제77조(교장 등) (삭제 2013.3.13.)

제78조(하부조직) (삭제 2013.3.13.)

제4절 중학교 (삭제 2013.3.13.) 제79조(교장 등) (삭제 2013.3.13.) 제80조(하부조직) (삭제 2013.3.13.)

제5절 유치원 (신설 2016.7.26.)

제80조의2(원장 등) (신설 2016.7.26.)

- ① 유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정원규모에 따라 원감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7.26.)
- ②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6.7.26.)
- 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7.26.)
- ④ 유치원에 행정직원, 영양사 등을 둘 수 있으며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7.26.)

제6절 정원 (절번호변경 2016.7.26.)

제81조(정원) (개정 2013.3.13.)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8장 대학평의원회

제81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신설 2007.1.3)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1조의 3(평의원회 구성 및 평의원 자격) (신설 2007.1.3./조이름변경 2021.04.29)

-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동문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01./2021.04.29./2021.09.16)
 - 1.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교원 4명 (개정 2019.09.19./2021.04.29)
 - 2.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직원 2명 (개정 2019.09.19./2021.04.29)
 - 3.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조교 1명 (신설 2021.04.29.)
 - 4. 학생대표회의에서 추천한 학생 2명 (개정 2016.03.01./2019.09.19/2021.04.29)
 - 5. 총동문회의에서 추천한 외부 동문 2명 (개정 2019.09.19./2021.04.29)
 - 6. 총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2명 (개정 2019.09.19./2021.04.29)
-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04.29.)
 - 1. 교원 평의원은 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중 교무위원(교무위원급위원 포함)이 아닌 자
 - 2. 직원 평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본교 정규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3. 조교 평의원은 본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단, 제4호에 해당하는자는 제외)
 - 4. 학생 평의원은 본교 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5. 동문과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서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 제81조의4(평의원 자격의 상실)(조개정 2021.04.29.) ① 교원, 직원, 조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 1. 휴직 또는 퇴직
-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 ② 학생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 1. 휴학, 수료 또는 졸업
 -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 3. 학생대표자 임기 만료
 - 4. 학생대표회의를 통해 학생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 ③ 평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81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신설 2007.1.3)

- ① 평의원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81조의6(평의원의 임기 및 사임) (신설 2007.1.3./조이름변경 2021.04.29)

-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2.6.)
-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천재지변 및 재난 등의 사유로 후임자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4.29.)
- ④ 평의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임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한다. (신설 2021.04.29./개정 2021.09.16)

제81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신설 2007.1.3)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대학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06)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06)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07.12.06)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07.12.06)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06)
-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1조의8(운영규정) (신설 2007.1.3)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삭제 2013.3.13.)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삭제 2013.3.13.)

제82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삭제 2013.3.13.)

제83조(위원의 선출 등) (삭제 2013.3.13.)

제8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삭제 2013.3.13.)

제85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삭제 2013.3.13.)

제86조(위원의 자격) (삭제 2013.3.13.)

제87조(위원의 의무 등) (삭제 2013.3.13.) 제88조(위원의 자격상실) (삭제 2013.3.13.)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삭제 2013.3.13.) 제89조(기능 등) (삭제 2013.3.13.) 제90조(시행 의무 등) (삭제 2013.3.13.)

제3절 운영경비 등 (삭제 2013.3.13.) 제91조(운영경비 등) (삭제 2013.3.13.) 제92조(위임규정) (삭제 2013.3.13.)

제4절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신설 2016.7.26.)

제9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6.7.26.)

제92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부속 풍무숙명유치원 원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6.7.26.)

제10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삭제 2013.3.13.)

제93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삭제 2013.3.13.)

제11장 보 칙

제94조(공고) 이 법인 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조선일보에 공고한다

제9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청렴의무 등) (조 신설 2022.11.17.)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에 따른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6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 윤홍섭

이사 김 준 평

이사 최 규 동

이사 현 상 윤

이사 최정신

이사 이용탁

부칙

1964년 1월 25일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

부칙

(1973.4.23. 대학 1042호) 이 정관은 197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8.17. 대학 1042호) 이 정관은 197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0.25. 대학 1040-1257호)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1.22. 대학 1040-1401호) 이 정관은 197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2.27. 대학 1040-274호) 이 정관은 197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28. 대학 1040-1970호) 이 정관은 197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6.24. 대학 1040-992호) 이 정관은 197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17. 대학 1040-1567호)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5.29. 대학 1042.3-541호) 이 정관은 198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5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일이후 6월내 당연 퇴직된다.
- ③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 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장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장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계 및 재심청 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대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1982. 8. 10 대학 1042.3-1705) 이 정관은 198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1. 8. 대학 1042.3-2473) 이 정관은 198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18. 대학 1042.3-7899) 이 정관은 198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5. 14. 대학 25422-760) 이 정관은 198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7. 10. 대학 25422-97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 로 본다.
- ③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 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교원장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장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계 및 재심청 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 (대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 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1991. 2. 25. 대학 25422-183) 이 정관은 199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27. 대학 25422-1307) 이 정관은 199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7, 대학 81422-1488) 이 정관은 199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11. 대학 81422-843) 이 정관은 199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12, 대행 81422-2435) 이 정관은 199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6. 대행 81422-1503) 이 정관은 199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9. 16. 대행 81422-2184) 이 정관은 199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8. 대행 81422-133) 이 정관은 199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16. 대학 81422-576)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29. 대학 81422-1087) 이 정관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97, 9, 29, 대학 81422-1102) 이 정관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7. 대학 81422-1209) 이 정관은 199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1. 대학 81422-318) 이 정관은 199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31 대행 81422-16) 이 정관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9. 대행 81422-299) 이 정관은 199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1, 대행 81422-451)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다.

부칙

(1999. 12. 29. 대행 81422-754)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14. 대행 81422-973) 이 정관은 200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4. 대행 81422-110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2001. 3. 12. 대재 81422-317) 이 정관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39조 제2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28. 대재 81422-812) 이 정관은 200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3. 대재 81422-1091) 이 정관은 200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4. 대재 81422-289) 이 정관은 200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30. 대재 81422-987) 이 정관은 200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7. 대재 81422-1176) 이 정관은 200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1. 대재 81422-347) 이 정관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17. 대재 81422-845) 이 정관은 200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27. 사학 81422-1171) 이 정관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29. 사학 81422-1354) 이 정관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7. 사학 81422-1801) 이 정관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9. 사학지원과-4871) 이 정관은 200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4. 사립대학지원과-81) 이 정관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 사립대학지원과-3206) 이 정관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6.16. 사립대학지원과-3531) 이 정관은 200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사립대학지원과-52)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재임 중인 감사는 임기 종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감사로 다시 선임 시 이를 초임을 간주한다.

제3조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재임 중인 학교장은 임기 종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학교장으로 다시 임명 시 이를 초임으로 간주한다.

부칙

(2007.1.30. 사립대학지원과-623) 이 정관은 200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06. 사립대학지원과-5523) 이 정관은 200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7호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7. 대학경영지원과-954) 이 정관은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3. 사립대학지원과-4910)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1., 사립대학제도과-7530)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당시 기능 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5조 제2항의 유아원 폐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부속 풍무숙명유치원 설립인가 완료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인 및 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2013.3.13.)

기관별 직종 및 직급별	법 인	대 학 교
총계	4	289
일반직계	4	182
2급(참 여)	1	15
3급(부참여)		25
4급(참 사)	1	35
5급(부참사)		30
6급(주 사)	1	40
7급(부주사)		32
8급(서 기)	1	5
9급(부서기)		
기술직계		51
4급(사서 참사)		9
4급(실험 참사)		7
5급(사서부참사)		7
5급(실험부참사)		8
6급(사 서)		3
6급(실험기사)		7
7급(부 사 서)		2
7급(실험기사)		3
8급(사 서 보)		2
8급(실험기사보)		3
9급(사 서 보)		
9급(실험기사보)		
기능직계		56
6등급계		26
운전기사		2
건축기사		
전기기사		3
목공기사		2
인쇄기사		2
원예기사		2
난방기사		5
도장기사		2
통신원		1
교환원		
조리사		1
방호원		2
위생원		4
7등급계		15
운전기사		1
건축기사		

기관별 직종 및 직급별	법 인	대 학 교
전기기사		1
난방기사		2
인쇄기사		
목공기사		
원예기사		
교환원		
사무보조원		2
방호원		6
위생원		3
8등급계		10
운전기사보		
목공기사보		
건축기사보		
전기기사보		1
수도기사보		
교환원보		
인쇄기사보		1
난방기사보		
원예기사보		
도장기사보		1
통신원보		
조리사보		
사무보조원		2
방호원		3
위생원		2
9등급계		5
운전기사보		
건축기사보		
전기기사보		
목공기사보		
인쇄기사보		
원예기사보		
난방기사보		1
사무보조원		2
방호원		1
위생원		1

임원

직 위	성 명	현 직
이 사 장	朴仁國	최종현학술원 원장
이 사	姜東世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	宋 英 淑	㈜한미약품 회장
"	尹 榮 恪	파빌리온자산운용 회장
"	尹恩基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	李 濟 浩	㈜로킷헬스케어 의료고문
"	李 幸 姬	한국코닝(주) 대표이사
"	張 倫 昑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감 사	金義性	매직소프트 대표이사
"	李 相 錄	옵티마파트너즈(주) 대표이사

법인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참 여 직 원참사 吳愛淑

